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9-41호
2019. 6. 28.(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규 도로명 부여 고시(고시 제2019-83호)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84호)4

공 고(4)

- 도로의 통행제한(부분통제) 공고(공고 제2019-590호)5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592호)8
- 사업인정 신청 열람공고(공고 제2019-598호)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공고 제2019-604호)11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589호)13

공									
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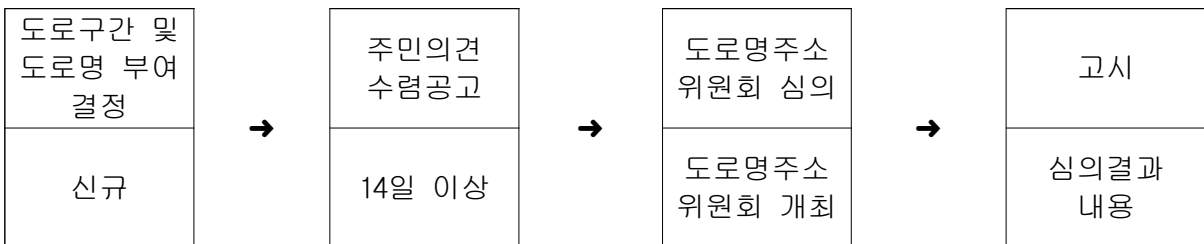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규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신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고시일 : 2019. 6. 28.(금)
2. 고시방법 : 구보,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 참조)
4. 도로명 부여 절차



※ 도로명변경은 도로명 고시일부터 3년경과 후 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부여 조서

순번	도로명	도로위계	관할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km)	폭 (m)		시작	끝		
1	상서로	로	대덕구	상서동 389-33	상서동 137-2	9	24	20	1	90	행정구역명(상서동)을 반영	
2	신탄진로349번길	길	대덕구	와동 325-1	와동 321-39	4	6	20	1	42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대덕대로1585 번길	길	대덕구	석봉동 778	석봉동 522-4	5	20	20	1	52	대덕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8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도로명 부여 현황도

<p>상서로</p>		
<p>신탄진 로349 번길</p>		
<p>대덕대 로1585 번길</p>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오정동 488-26	대전로 1025	2019. 6. 28	건물신축	대전시의 주요도로임을 반영	
오정동 488-28	대전로 1025-1	2019. 6. 28	건물신축	대전시의 주요도로임을 반영	
중리동 200-1	중리동로17번길 39-1	2019. 6. 28	건물신축	중리동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중리동 249-38	홍도로 130	2019. 6. 28	건물신축	동구 홍도동과 대덕구 중리동을 지나는 도로로서 시작지점인 홍도동의 명칭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 - 590호

도로의 통행제한(부분통제) 공고문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도로의 종류	구도 / 덕암로 구도 / 선비마을로	노선명	중로2-48호선 소로1-법동5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을 제외한 전차량	구간	평촌동 545번지 및 법동 489-4번지 일원
기간	2019년 06월 24일부터 2019년 07월 14일까지		

이유

- 도로정비공사에 따른 작업 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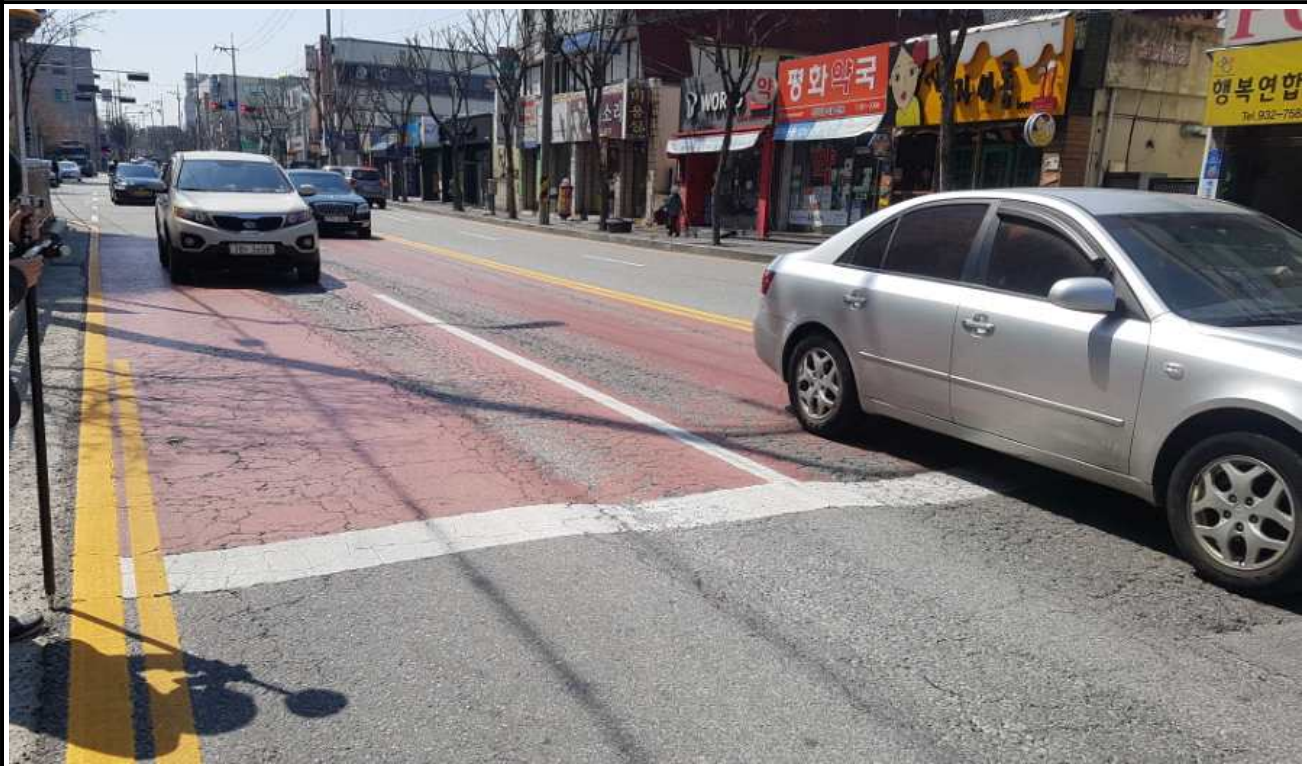
그 밖의 사항

- 통제방법 : 주행차로 중 일부 부분통제(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 통행방법 : 교통신호수 배치를 통한 우회도로 안내 및 차량 통제
- 시행청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 연락처 : 대덕구 건설과(☎042-608-5215), 대림공영(주)(☎010-7181-3959)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위치도 및 현황사진

덕암로 / 평촌동 545번지 일원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선비마을로 / 법동 439-4번지 일원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대덕소방서장(119재난대응과장)으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전로	소방용수 시설 설치	읍내동 98 앞	65	아스콘	2.0	'19.7. ~ '19.8. (착공일로부터 3 0일)	4.8 (착공일로부터 30일)	1.0
				65	투수블럭	2.0			

2019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사 진 대 지



위 치 도



현 황 사진

사업인정 신청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전상서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 보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의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협의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사업 인정 신청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명 : 대전상서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전상서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4. 사업예정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146-11번지 일원
5.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 :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9. 6. 28. ~ 2019. 7. 19.(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7. 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별관 4층)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042-608-5102)

6. 기타 사항 : 관계서류는 공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중에 의견서를 우리 구청 도시재생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명예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19. 6. 28. ~ 2019. 7. 17.
2. 공고방법 : 구보,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명예도로명 부여

명예도로명	도로구간		부여사유	사용기간
	시작지점	끝지점		
금형산업로	신탄진동 712-1	신탄진동 222	도시개발산업 평촌지구 내 금형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함	3년 (2019. 6. 28. ~ 2022. 6. 27.)

※ 위치도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공고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능을 내실 있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문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 나. 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 기능에 관하여 앞서 조문에 열거된 지원사업(안 제5조)을 심의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9. 06. 28. ~ 2019. 07. 19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7. 1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전화 : 042-608-6784, FAX : 042-608-3836, E-mail : wellist@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담당자 오인숙
(전화 : 042-608-67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과 훈련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5. 다문화가족 내 보건·아동보육·교육지원
6. 각종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협회의 기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u> <u>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과 훈련</u> <u>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 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u> <u>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u> <u>5. 다문화가족 내 보건·아동보육·교육지원</u> <u>6. 각종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u> <u>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와</u></p>

제5조 (생 략)

제6조(협의회 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구와 민간 등의 각종 사업의 조정 및 효율화·내실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지원
4.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
5. 다문화가족 관련 지역단위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사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신 설>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삭 제>

제7조(협의회 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

제7조 ~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항

2. 제5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 제12조 (현행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삭제>

[관 계 법 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과	
담 당 자 연 락 처	오 인 숙 042-608-6784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